##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79 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 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| 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  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|                  |
| 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   |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략)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|
| <u>2. 미성년자</u>     | 2. 18세 미만인 사람    |
| 3. ~ 6. (생 략)      | 3. ~ 6. (현행과 같음) |